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 부여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5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3.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보장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산관리번호</u> 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 ----- ----- ----- ----- ----- ----- <u>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의21)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가 없거나²⁾ 이용이 어려운 경우³⁾,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를 말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 외에도 의료기관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상담기관의 장 등의 신청이나 보장기관 장의 직권에 따라 부여되고 있음.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발급 현황 >

(단위: 건, %, 2026. 6. 30. 기준)

합계	행려환자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보장시설* 입소자			보호출산 대상자
			소 계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개인정보 보호자	
3,742	150 (4.0)	571 (15.3)	2,817 (75.3)	335 (9.0)	2,461 (65.8)	225 (6.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 정신 요양·재활 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행려환자,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출생미등록 아동 등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출산에 따른 위기 임산부 등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

국민의 수급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5조제1항4)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로서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5)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6)에 따른 상담기관의 장이 본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신청 주체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경우,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상담기관의 장 등은 법률상 신청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전산관리번호 신청권자의 범위가 현행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서 전산관리번호 신청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자격 및 신청인 현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신청인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전산관리번호 부여 요청을 받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신청 - 단, 행려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불명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인이 됨. ☞ (부여) 시·군·구 사업 담당자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부여)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상담기관의 장 ☞ (부여)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자료: 보건복지부

3.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전산관리번호의 직권 발급 가능 규정 및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국민의 수급권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서 취지에 동의함.

다만,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 외에도 관련 시설의 장이 신청 가능하며, 보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 발급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개정안은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 “등”으로 규정하여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8